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225 발의년월일 : 2007. 8. 31.

발 의 자 : 김인식 의원 외 7인

1. 제안이유

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나아가 여성의 건강복지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설치·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의 이용 여성들에게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 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대전광역시가 관리·운영하는 수영장의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관련 규 정을 신설함(안 제13조의2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

라. 기 타:

- (1) 신・구조문 대비표
- (2) 찬성의원 서명

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별표 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이용료의	감면) ① (생략)	제13조의2(이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
		같음)
1.~5. (생략)		1.~5. (현행과 같음)
<u> </u>		②시장은 별표 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
<u> </u>		
		용하는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
		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
		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
		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

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찬성의원서명

의 원 명	서 명	비고
强 & 马	an	
7 34 9/	Hou	
\$ 2/3	122	
770	62m 186	
7-1 12/3 12/4	Mary	
링 재 경	740	
25 00 2	"Toola	
Sh 21 21	7	